

신영지웰 평택화양 단지내 상가 공급공고

■ 본 근린생활시설 공급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 2026-주택과-분양신고-3 [2026.05.11.]호로 상가 공급신고 수리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화양지구 9-1블록(A9BL 3LOT)
- 대지면적 : 49,525.10㎡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 면적)
- 건축물 지상 연면적 : 113,809.5353㎡ 중 근린생활시설 551.5966㎡
-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 지상 1,2층 8개 점포(호)
- 주차대수 : 지상 5대
- 입점 예정일 : 2027년 4월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하며, 입점예정기간 내에는 연체료 및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확한 입점 지정일은 추후 통보 예정), 준공 및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호실	공급면적(단위: ㎡)			대지지분	공급금액(단위: 원)				비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포함)	계약면적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내정가 (최저 입찰기준가)	
1동 101호	50.5000	28.7855	79.2855	29.3760	177,980,183	308,453,470	30,845,347	517,279,000	
1동 102호	50.5000	28.7855	79.2855	29.3760	166,856,401	289,175,090	28,917,509	484,949,000	
1동 103호	50.5000	28.7855	79.2855	29.3760	166,856,401	289,175,090	28,917,509	484,949,000	
1동 104호	52.0150	29.6501	81.6651	30.2572	166,133,514	287,922,260	28,792,226	482,848,000	
1동 201호	50.1850	28.6060	78.7910	29.1927	105,838,685	183,426,650	18,342,665	307,608,000	
1동 202호	40.0000	22.8004	62.8004	23.2681	82,015,627	142,139,430	14,213,943	238,369,000	
1동 203호	40.0000	22.8004	62.8004	23.2681	82,015,627	142,139,430	14,213,943	238,369,000	
1동 204호	41.2000	23.4844	64.6844	23.9661	86,889,378	150,586,020	15,058,602	252,534,000	

- 호수별 세부 위치는 사업주체 분양사무소(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56-1)에서 확인 가능
- 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상가 공급금액은 각 점포당 상가 면적, 위치 등에 따라 분양가가 상이함.
- 상가 공급금액에 각 점포당 상가 점포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점포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가 면적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 상가 점포별 계약면적에는 복도, 화장실, 실외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가 점포별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아파트 대지면적 제외)을 점포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화장실, 실외기실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점포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음.
-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함.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실입주일 중 선 도래일에 완납하여야 함.
- 상가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종류 및 시설군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인·허가관청의 관련절차에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방법 : [근린생활시설] 총 8개 호실 점포별 내정가 공개 최고가 경쟁입찰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 신청서는 입찰 현장에서 접수하며 입찰순서, 진행방식 등은 입찰 당일 현장여건 및 상황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찰금액은 호실별 내정가 이상으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경쟁입찰제임.
- 1인당 입찰신청 점포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개의 점포를 낙찰 받아 계약할 수 있으나, 1인이 동일 호실에 중복 신청은 불가함.
- 입찰보증금은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으로 하고(낙찰시 계약금으로 대체), 자기앞 수표로 준비하여 입찰 시 입찰신청서와 함께

동봉하여 현장 납부.

- 입찰신청서 작성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입찰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철회, 교환, 변경할 수 없음.
- 입찰금액은 백만원 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함.(백만원 단위 미만은 자동절사)
- 입찰금액 기재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모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과 아라비아숫자가 다를 경우에는 한글을 우선함.
- 입찰은 해당시간까지 입찰 참가 신청 후 교부받은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입찰함에 투찰 하여야 함. (마감일시 이후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전체 호실별 내정가 이상의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응찰자가 1인일 경우라도 내정가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입찰가의 한글과 아라비아숫자에 금액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표기 금액을 우선함)
- 동일금액 최고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즉석에서 공개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입찰 희망금액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고가 입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책임이니, 입찰 희망금액 결정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포기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되며 미계약 호실은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함.
- 낙찰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은 무효되고 계약은 해제되며, 입찰보증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됨.

■ 입찰 참여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입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등록신청서(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본인확인 증표 : 본인 주민등록증(or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1통 • 본인 인감도장 또는 서명 • 입찰보증금 : 일천만원(₩10,000,000) ※ 입찰보증금은 입찰시 일천만원 수표로 수납(입찰인 또는 대리인 이서)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등록신청서(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본, 인감증명서(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인감도장 • 입찰보증금 : 일천만원(₩10,000,000) ※ 입찰보증금은 입찰시 일천만원 수표로 수납(입찰인 또는 대리인 이서)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대리인 신청시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추가 구비. •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 입찰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도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찰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상가별 시설용도

시설용도		권장 용도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의 소매점, 휴게 음식점·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의원, 탁구장 및 체육도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종교집회장 등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기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업종을 참조 바랍니다.	

※ 상기 업종은 예시에 불과하며, 입주 업종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Ⅱ. 공급일정 및 장소

■ 공급일정

• 입찰일정 및 계약일정

구분	일정	장소
입찰 일시	2026. 05. 16 (10:00~12:00)	분양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56-1, 2층
개찰 일시	2026. 05. 16 (14:00~)	
계약 일시	2026. 05. 16 (15:00~17:00)	

■ 입찰 유의사항

- 공급공고 신고처리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법인에 한하며, 입찰 참가 신청 접수자에 한해 입찰참여가 가능함.
- 낙찰자 선정은 사업주체 내정가 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단, 최고 응찰금액이 2인 이상 같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추첨방식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입찰금액이 사업주체 내정가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함.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대금의 일부로 대체함.
- 낙찰자 확인은 당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차질자 및 경쟁률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입찰서는 제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낙찰자는 상기 계약일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낙찰은 무효(유찰)이고 입찰보증금은 공급자에 귀속됨.
- 유찰 또는 낙찰 무효시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진행 예정임.
- 입찰신청은 8개 호실 일괄로 입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은 개별호실로 체결하여야 함.
- 입찰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미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당일 낙찰자 발표 이후 현장에서 제출한 자기앞 수표로 현장에서 즉시 환불됨.

■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 (계약서 기재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인지세 납부금액 15만원)

■ 부동산 거래신고

1. "사업주체"와 "입주자(수분양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Ⅲ. 분양대금 납부시기 및 방법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납부일자	계약 시	자납(2026.10.16)	입주지정기간의 만료일과 실 입주일 중 선도래일
납부계좌	393337-04-009918 (금융기관 : 국민은행 , 예금주 :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 계좌이며 계좌번호 확인 후 입금 바람.

- 당첨된 점포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음.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층·점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1동 1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동 101 홍길동)
- 낙찰자가 지정된 납부일자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음.
-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납부 이후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가능함.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물건 취득 인정 시(분양대금의 90% 이상 납부한 경우) 권리양도(전매)는 불가능함.
- 분양권 전매 시 지정된 일자에 전매 진행 및 서류 수령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대금 미납, 연체료 미납 시에는 전매는 불가능함.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본 단지 내 상가(근린생활시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단지 내 상가(근린생활시설)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6812026-101-0000100호	₩601,381,000원	분양신고 수리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 1 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 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주채무자 】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분양이행 】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 【 환급이행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 2 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공급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 】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공급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공급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공급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공급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 4 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공급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공급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IV. 유의사항

- 설계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수인·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종교시설, 혐오시설유무, 학교, 버스정거장, 전기공급설비, 건물,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침수피해,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도로(개설, 기존도로) 및 인접 건축물(학교 등)의 영향으로 소음, 분진, 악취, 통행 불편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 설치되는 도로, 완충녹지(수목 등 식재 포함), 보행자 및 차량 신호등 및 볼라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빛, 소음, 분진 기타

- 외부인 통행, 시야 차단 등에 대하여 입점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외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및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귀책사유가 없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비 또는 눈에 의한 물 튀김, 비산 먼지, 소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외벽, 창호 등의 청소비용 및 가림막 등 추가 시설물을 요청할 수 없음.
- 배치상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은 냄새, 소음, 매연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의 구조물로 구축되나, 크기 및 형태, 디자인, 재료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배치상 실외기실과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은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 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지상주차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공유 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간주되어 지상주차장에 공동주택 입주인 차량의 주차 및 통행이 허용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대지 공유지분 구조로 지상 주차장에 대한 운영 및 통제 방식은 입주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 간의 관리규약 및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계획되었으며, 추가적인 충전시설(충전소, 이동식충전기 등)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음.
-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화재 등)를 위하여 위치 및 구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각 호실별 부과됨.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와 주변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한 건물 완공 후 소음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시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방음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호(실)의 일조 및 조망,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 레벨은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홈페이지 등에 표시되는 각종 시설(개발계획, 교통계획,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인허가관청 및 국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귀책사유가 없음.
- 계약자는 현장 확인, 접근로 단차, 외관 및 내부마감재 등 기타 제반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확인 및 숙지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추후 시공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전용공간의 마감은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된 마감 이외에 별도 시공되지 않으며,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자 공사분임.
- 본 상가의 공급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및 CG(조감도, 투시도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근린생활시설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조 및 면적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경미한 사항의 변경(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전용 및 공용 공간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복도 및 점포내부 일부 벽면에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등이 노출형으로 설치될 수 있음.
- 옥외광고물 설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경기도 및 평택시 관련 지침 및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일부 점포는 외부구조물(환기구, 배관) 등으로 인하여 간판 설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창호가 설치되는 외벽과 근린생활시설 외부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점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천정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설계변경에 따른 화장실, 복도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건물명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점포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호실별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라 공부 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용부분 전기료 부과 원칙은 관리규약에 의함.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또한 근린생활시설 경계를 벗어나는 범위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음.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구조물 변경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진입로 및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할 수 없음.
- 호실별 평면이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실별 위치, 출입구, 평면, 바닥, 층고 및 유희고, 기둥 간섭 및 돌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의 창호 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공간 활용성 등의

-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의 품귀, 품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질의 타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본 건축물 내·외부의 공용 시설 (전기, 설비, 조경시설 등)의 유지 보수 및 관리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내 도로, 조경 시설물,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보안등, 공용부분, 단지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함.
 - 일부 점포는 옥외 보안등, 차량 진출입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호실별로 내부에 내력벽 또는 기둥이 존재할 수 있으니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 호실 사이에는 경량벽체로 시공됨. (일부 벽체는 콘크리트, 조적벽체로 시공)
 - 점포간 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 각 점포내 최종 공사시 마감재로는 바닥은 비닐계타일, 벽면은 수성페인트, 천정은 지정텍스 마감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주변 일부에는 버스정류장 및 맘스태이션 공동주택용 안내표지판, 화단, 조경수, 조경석,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가감차선,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마감 재료 등)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색채 심의 등을 포함)결과 및 법령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디자인은 적법한 인허가 절차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조경식재 및 각종 시설물은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사업승인도서(변경 포함)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상가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음.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이와 관련 추가 또는 변경 등을 시공사 측에 요구할 수 없음. 또한 기타 점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간판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점포별 배수구는 1개소 있으며, 추가 시설 및 이설은 계약자 부담임)
 - 각 점포의 기본 설치된 배관 외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타 점포 천장을 통해 실외기실까지 입점자가 개별적으로 배관 및 전원선 등 일체를 시공 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수행시 타 점포입점자의 시공 동의 역시 입점자가 받아야 함.
 - 점포 내 별도 환기시설(주방배기) 및 냉난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해당 기기 설치로 인한 민원(에어컨 실외기 소음, 냄새 등) 해결은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호별 급배수시설은 호실 내부에 위치, 가스 배관은 분기 배관 이후 상가 계약자 또는 입주자 책임 공사임(가스 공사비는 계약자 또는 입주자 부담).
 - 근린생활시설 진출입 차량 동선은 단지 출입구 부분의 아파트 차량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되며, 사업승인도서 이외의 진입로 및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할 수 없음.
 - 각 점포별 바닥 마감 레벨과 보도블록 레벨과의 단차가 발생 시, 장애인 출입 등을 위한 설비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니, 이점 양지하신 후 입찰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사업승인도서와 일부 레벨 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점포별 전면 단차, 역구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계단, 램프, 참, 난간 또는 배수시설이 시공될 수 있음.
 - 경량벽체 또는 콘크리트블록 벽체로 시공된 점포간 벽의 경우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별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벽체에 부착물 설치시에는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 복도 천정 내부의 소방 및 가스, 위생설비 배관설치로 인하여 반자 높이는 조정될 수 있음.
 - 외부창호 프레임 사이즈 및 간격, 유리두께, 사양 등은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별 바닥 단차 등으로 창호 입구와 개폐 위치 및 출입문의 위치와 개폐방향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측벽부 입면에는 우수선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위치에 따라 일부 점포의 전면에 공용 옥내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호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각 점포별 천정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개별적으로 천정공사를 하실 경우에도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함.
 - 각 점포별 급수, 가스, 전기 배선 및 배관은 설치될 예정임.
 - 급수계량기는 설치예정이나, 가스계량기는 추후 입점자가 별도 부담으로 설치하여야함.
 - 각 점포 내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통신단자함, 전기분전함의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별 최초 계약 전기용량은 3Φ 5KW이며, 입점지정 기간에 계약자는 전기사용계약변경(명의변경)을 하여야 하고, 점포 면적 및 용도별 전기계약 용량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점 후 반드시 한전에 문의하여 필요에 따라 수분양자 부담으로 계약용량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함.
 - 전기는 각 점포별로 검침되어 요금이 개별 고지되며, 공용시설(근생관리사무소, 창고, 화장실, 복도 등) 및 기타 공공요금은 수분양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하자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됨.
 - 별도의 방범셔터는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실외기 설치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복도 및 각 실의 점유공간 천장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주변 도로 및 보도는 지형 여건에 따라 호실 출입구에 경사로 및 계단이 형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점포별로 바닥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출입문 전면에 경사 및 단차(계단)가 생길 수 있음. 이 점에 대해 별도의 시공 요청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공용부분의 시설물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변경 포함)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외 도로 및 지상주차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추후 도시가스공급자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 정압기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승강기, 펌프실 등의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단지 내 완충녹지, 연결녹지, 교육시설(학교 등), 도로(보도 포함)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분진, 악취, 침수 피해,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및 기타 외부인 통행에 대하여 입점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점포는 전면에 외부 도로와의 단차로 인한 난간 및 벽체가 생길 수 있으며,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화장실, 계단실 등 사용 시 점포별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 입점자 모집공고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V. 기타사항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의 마감재는 계약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분양과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사업부지 외 인근의 도로, 근린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학교, 버스정류장, 주차장용지, 전기공급설비 등은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 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 시기 및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귀책사유가 없음.
 - 계약자는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근린생활시설)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 공급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 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름.
 - 공급된 점포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점포관리, 영업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 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각 점포의 시설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로 공급하며, 입주업체의 특성에 따른 내장재 변경과 진열대, 간판 및 추가 설치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 계약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지정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고, 입주 및 입주 후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입주자 상호 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급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음.
 - 입찰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임.
 - 분양 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점포에 대한 점포구획(호수 및 면적조정) 및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상가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라도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입찰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함.
 - 당첨 및 계약 이후 주소나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첨부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함.
 -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주체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여야 함.
 - 업종지정호실을 제외한 기타 점포를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본 업종지정에 대하여 고지 후 매도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계약자(고지하여 소유권 이전시 고지받은 소유자) 에게 있음.
 - 분양면적 등은 향후 사용승인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변경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점포별로 명시된 용도(시설) 내에서 개점 가능한 업종과 관련하여 해당 인허가 관청에 제한사항, 등록.허가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호수별로 명시된 용도(시설) 내에서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며, 용도(업종)변경 등에 따른 추가 하수원인자부담금 등 관련 비용은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또한 영업 중복업종에 따른 모든 문제는 분양사업자가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음.
- 공용시설은 공동으로 사용 및 관리(유지비용 및 보수비용 부담 등 포함)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계약자가 건축물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를 하여야 함.
- 향후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점포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점포관리, 영업개설 허가, 인.허가에 따른 시설추가, 용도변경, 시설보완, 냉난방기 개별설치 등)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학원교습소 등으로 영업을 원하는 분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인가 최소면적 및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라며 인허가에 따른 제반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처리하여야 함.
-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사업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음).
-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세 환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이 직접 숙지하여야 함.
- 입주자의 간판은 입주상가의 외경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을 규정 및 지자체의 지침, 자체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입주자(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함(단, 간판설치와 관련한 입주자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하기로 하며, 개별 표시(변경)허가 신청 후 옥외광고물을 적절한 규격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함).
- 도로 관련 시설물(가로수, 신호등, 가로등 등)은 임의로 이동 및 철거가 불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근린생활시설 대지는 공동주택과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분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요청을 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이후 사용승인 및 잔금 납부 이전에는 점포 내부 및 외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공급회사에서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기타 영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은 필요시 영업합성화를 위해 별도 MD 계획을 수립, 실행할 경우 면적 및 외관(외벽형태, 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수분양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CCTV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부분 냉난방 전기료 부과 원칙은 상가 관리규약에 의함 .
- 대지분별은 공동주택, 대지분별을 제외한 대지분별을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 별로 안분하였음. 지적확정측량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부가 확정될 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점포별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라 공부 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오차범위의 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 상가의 간판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단지 및 상가의 미관을 감안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설치(부착)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은 해당 관할관청 기준에 따라 광고물 설치계획 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당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 각 점포 입주 예정자는 간판 및 실외기 설치 시에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와 협의 및 관련 보행자,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상가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으며,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개발계획 변경 또는 향후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대장 작성,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사업일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종(예:담배영업권취득 등)은 입점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영업허가 가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준공 및 환지 처분 후 환지 등기가 완료된 후 대지권 등기가 가능함.
- 본 사업부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평택연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가칭)화양4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은 설치가 제한됨.

■ 입주예정일 : 2027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점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일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선 도래일에 모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당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사전 점검 없음.

■ 감리자 및 감리금액(VAT포함)

구 분	건축/토목/기계	전기	소방
회사명	(주)해밀씨엠	(주)한국전기설계감리기술단	(주)한동엔지니어링
감리금액	4,387,638,750	803,338,000	790,453,500

■ 사업관계자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영대능개발	주식회사 신영씨앤디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59-36, 202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59-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에이동 257-1호 (구미동,시그마2오피스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50111-0335568	150111-0093512	110111-0101909

■ 분양사무소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56-1

■ 분양문의 : 1899-1210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